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 (제26조제3항 관련)

구 분	인 증 기 준																													
1. 종 축	가. 소 1)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50퍼센트 이상이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외모심사의 성적이 80점 이상일 것 2) 보유하고 있는 소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별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것 가) 한우: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40퍼센트 이상이 후대검정성적(後代檢定成績) 기준 일당증체량(日當增體量) 0.7킬로그램, 육질등급 2등급, 등심부위 근육면적 7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젖소: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40퍼센트 이상이 국내산의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젖소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고, 수입 젖소의 경우에는 원산국이 공인한 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미국은 상위 15퍼센트 이내, 캐나다가 및 일본은 상위 5퍼센트 이내, 호주는 상위 2.5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돼지 1) 종돈의 능력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table><tr><th rowspan="3">품종</th><th colspan="2">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th><th rowspan="3">사료 요구율</th><th rowspan="3">등지방 두께 (cm)</th><th rowspan="3">생존 새끼 수 (마리)</th></tr><tr><th rowspan="2">90킬로그램 도달일령(일)</th><th>1일 체중 증가량(g)</th></tr><tr><th>농장</th><th>검정소</th></tr><tr><td>랜드레이스, 요크셔</td><td rowspan="2">131 이하</td><td rowspan="2">720 이상</td><td rowspan="5">1,000 이상</td><td rowspan="5">2.2 이하</td><td rowspan="3">1.5 이하</td><td>15 이상</td></tr><tr><td>두록</td></tr><tr><td>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td><td>145 이하</td><td>640 이상</td></tr><tr><td>번식용 씨돼지</td><td>125 이하</td><td>750 이상</td><td colspan="2" rowspan="2">2.0 이하</td></tr><tr><td>재래돼지</td><td>210 이하</td><td>320 이상</td></tr></table> 비고 1. 1일 체중 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2. 생존새끼 수는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1 이하	72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15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	145 이하	64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25 이하	750 이상	2.0 이하		재래돼지	210 이하	320 이상
품종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cm)					생존 새끼 수 (마리)																					
	90킬로그램 도달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1 이하	720 이상	1,000 이상	2.2 이하	1.5 이하	15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	145 이하	64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25 이하	750 이상			2.0 이하																									
재래돼지	210 이하	320 이상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3.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times 1.08 = 8.6$)		

2) 돼지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DNA검사결과가 음성일 것(다만, 부모가 음성일 경우 검사 없이 부모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

3) 보유 씨수돼지의 혈통, 이동 및 도태기록을 모두 유지할 것

2. 위생·방역	가. 소 : 브루셀라병·소렙토스피라병·소마이러스성설사증·캠필로박터감염증·트리코모나스감염증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돼지: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고, 톡소플라즈마병, 돼지췌코바이러스, 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및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중 4종 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정액품질 관리 등	가. 생산된 정액의 개체별 정액농도·생존율 및 미생물 오염여부 등 수정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된 기록을 유지할 것 나. 정액의 채취·제조·샘플검사 및 판매 기록을 반드시 유지할 것
4. 인력·시설 및 장비	가. 인력: 정액의 생산인력과 판매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 나. 시설 1) 외부에서 들어온 종축의 사육시설을 별도로 보유할 것 2)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보유할 것 다. 장비: 정액수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보유할 것
5.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